



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8월

CONTENTS

세법개정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세무동향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예규판례

○ 법원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가 문제된 사건
-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구소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복 (지방세) 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의 보전순서
- 도매업 영위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세법개정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8.26.(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8.2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 보도자료(Link)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 4·§47의 5)

〈수정안〉 적용시기 변경

-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개정규정 적용
-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국징법 §116)

〈수정안〉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조특법 §100의 18)

〈수정안〉 가산세 항목 추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 19, §76의 21)

〈수정안〉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29일(금)부터 24일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바로가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개정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 (세무조사의 경우) 20일 전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7일 전
〈개정이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 세도 사전통지 기한을 국세 규정과 일치 필요

■ 지방세법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개정안〉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에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추가
〈개정이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

○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 등)

〈개정안〉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
- (신고절차) 신고·납부 절차 신설
- (납부세액)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개정이유〉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자발적 신고 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안 영§28 조의 2 등)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민간임대주택 포함
- (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년·6년) 민간임대주택
- (적용기간) 1년 한시 중과제외 및 임대기간동안 주택 수 제외
〈개정이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후속조치로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10년·6년)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안 영§28 조의 2 등)

〈개정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중과 제외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
- (대상)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 (적용기간) ~'26.12.31.

-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 ~ '27.12.31. (현행 주택 수 제외 규정과 동일하게 추가 1년을 기준 주택 수에서 제외)

〈개정이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후속 조치로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지원 효과가 상이한 '주택 수 제외' 대신, 취득세 완화 효과가 큰 '중과배제'로 세제 지원 확대(~'26.12.31.까지 1년 한시 적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로 1년 동안(~'27.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 **CR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 의 2 16)

〈개정안〉 CR 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일몰 연장

- (취득기간) '24.3.28. ~ '26.12.31.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및 주택 시장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안 영§78 의 2)

〈개정안〉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개정이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에 기여

○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안 영§78 의 2)

〈개정안〉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개정이유〉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층의 수도권 이직 방지 지원

○ **법인지방소득세 서울 환원**(안 법§103 의 20①)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서울 상향 조정

- (일반법인)

과세표준	세율
2 억원 이하	1.0%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
200 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	2.2%
3,000 억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 억원 이하	2.0%
200 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	2.2%
3,000 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 의 23①)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

○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안 영§103 의 2, §118)

〈개정안〉 공용·공공용 사용토지의 세부담 완화 기간 확대

-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 별도합산 적용

-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 세부담 상한 계산 시 활용
〈개정이유〉 빈집 관련 재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①8, §185)

〈개정안〉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감면 적용(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수탁자에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이유〉 부동산의 실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실상의 실태가 동일하다면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따른 신탁 활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 5, §90)

〈개정안〉

추징규정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인구감소지역)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마을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현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고 있으나, 신축의 경우 공사소요기간 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직접 사용개시의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년으로 완화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75의 2)

〈개정안〉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 연장

-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일몰기한) 2028.12.31.
-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준용

〈개정이유〉 기업도시·낙후지역의 개발 육성을 통한 지방 투자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85의 2)

〈개정안〉

감면 연장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일몰기한) 2028.12.31.
- (사후관리 규정)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개정이유〉 교육·문화 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 5)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
- (적용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고용시점에 해당 법인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 (적용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고용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한도 없음)
- (사후관리) 3년 이내 폐업·해산 등 사유시 추징

- (일몰기한) 2028.12.3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법§7 의 7, 영§5 의 16~19)

〈개정안〉 환급 관련 규정 신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직권 지급제도 운영 근거 신설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급 절차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환급 누락 등 국민의 재산 손실 및 행정 비효율 발생, 환급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국민 재산 보호 및 환급 절차 운영 효율화

○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법§7 의 9, 영§5 의 12~14)

〈개정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유예 등 신설

-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개정이유〉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통해,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납부자 권리 보장 및 징수율 제고

세무동향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26.6 월)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25.8 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8.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 개 사업연도 중 2 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 억 유로(약 1 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 과세권 배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세액을 해당 소재지국에 납부- STEP 2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국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STEP 3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 전환기 적용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 으로 인정하는 제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 년간 시행)- 소액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해당 관할국 내의 총수익금액 1 천만 유로(약 150 억원), 세전이익 1 백만 유로(약 15 억원) 모두 미만인 경우- 간이실효세율 요건: 단순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이익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예규판례

[법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자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 두 32946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 152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사안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동화 시설 건설 등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비용은 대상 자동화 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은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생산성향상시설’)에 2017.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 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그러므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그리고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 2 호기는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 2 호기 중 발전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자동화 시설’)는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이 정한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나아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41 조 제 1 항 제 2 호는 자산의 취득 가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구 법인세법과는 입법 목적이 달라, 두 법률 중 어느 하나에서의 특정 용어가 다른 법률에서의 유사 개념과 동일한 의미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두 법률의 유사 개념을 일치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그런 다음, 원고가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및 시운전비 가운데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대응하는 각 해당 판시 부분은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이 사건 투자금액은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서의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세액공제액 6,974,554,696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법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 두 33285 판결, 파기자판)

■ 쟁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 161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 규정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음. 제 1 심은 원고의 청구이유 중 절차적 위법사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취득세 경정처분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사안임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임.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 두 5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또는 본세의 취소가 과소신고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조세심판원]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지 2164, 2025.5.28., 취소)

■ 쟁점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대구광역시 중구 OOO 외 1 필지 상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옥상에 설치된 수조(이하 “쟁점수조”)와 8층 테라스에 설치된 수영장(이하 “쟁점수영장”이라 하고 쟁점수조와 함께 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을 「지방세법」 제 6 조 제 4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조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67 개 호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호실별로 합산 과세하고, 쟁점수영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7.8.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 6 조 제 4 호, 제 10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제 2 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레저시설·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는바, 레저 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여야 하며, 여기서 ‘다른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건축물의 일부인 옥상이나 테라스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아울러, 어떠한 시설이 건축물에 설치되어 물리적으로 결합되고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 256 조의 부동산 부합물 개념과도 부합하는바, 쟁점수조는 건물 옥상에 위치하여 급수·배수시설로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쟁점수영장 역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독립적인 사용이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구소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복 (지방세) 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17, 2025.6.23.)

■ 질의

-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 중(지방세특례제한법 §180)
-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구소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복 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862 호, 시행 2024. 1. 1., 이하 “舊지특법”) 제 180 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2 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1996.10.11., 선고 96 누 1337)

하나의 건축물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되는 면적(이하 “연구소 면적”)과 그 외 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중첩되지 않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지방세 특례제도과-846, 2023.4.14. 참조)

따라서 연구소 면적은 舊「지특법」 제 46 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이하 “연구소 감면”)을 적용하고, 연구소 면적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연구소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 외 면적에 대하여는 舊「지특법」 제 47 조의 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중복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중복 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

[국세청]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법인-0961, 2025.5.29.)

■ 질의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이 100% 출자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중소기업도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모법인(이하 '지배기업')은 '21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배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100% 출자하여 설립됨
- 설립 당시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기준 중 독립성 기준을 제외한 업종, 규모, 자산총액 기준은 모두 충족함

회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의 보전순서

(서면-2024-법규법인-2043, 2025.6.26.)

■ 질의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쟁점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순서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8.26.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1.9.29 감자등기를 완료하여 감자 결과 감자차손(이하 '쟁점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음
-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쟁점 감자차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하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하였음(상법 제 461 조의 2에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마련 목적으로 전입)
- '22.3.28.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21 사업연도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음
- 질의법인은 향후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하여 배당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쟁점 감자차손의 보전이 먼저 이루어지는바 쟁점 감자차손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어디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 배당 시 배당 재원이 달라짐(쟁점 감자차손이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서대로 보전된다고 볼 경우 향후 배당결의시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남아있는바 향후 배당 시 과세안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상법」 제461 조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도매업 영위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024, 2025.6.26.)

■ 질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쟁점 물류센터 투자완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일부 면적을 창고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 공구 도매업을 주업(질의법인의 정관상 도매업, 창고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으로 하는 법인으로 ‘22.4 월 경북 ○○시에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쟁점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5.4 월 준공
- 질의법인은 쟁점 물류센터를 주업인 공구 도매업(재고자산 보관 및 출고용도)에 사용할 예정이나 일부 면적에 대해 화주의 물품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수령하는 창고업에 사용할 예정임
- 창고업은 화주의 물품 보관을 위하여 쟁점 물류센터 및 관련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과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보관용역 관련 직접비 및 간접비 등에 적정 수익률을 반영한 보관료를 물품 부피(CBM) 당 단가기준으로 청구하는 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이하 ‘창고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 24 조 제 3 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청]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3, 2025.7.31.)

■ 질의

A 법인이 S 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불한 대가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 법인은 캐나다법인 S 사와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재판매에 관한 파트너계약을 체결함
- 당해 계약은 비독점적이며 재판매 가격 결정 권한은 질의법인에 있으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 사의 승인이 필요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 93 조제 8 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2 조 및 의정서 제 4 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